



한국 세 미래
대한민국 세미래

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



님 안녕하십니까?

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뒷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신청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(지급은 심사 후 9월 30일까지)**

■ **신청방법은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

- ① **ARS 신청** : 1544-9944로 전화한 후 [1번]을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**개별인증번호**()와 **주민등록번호**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* 3분 당 유선 39원, 무선 250원 정도의 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.
 - * ARS 권장시기는 5월 일()이며,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,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이용하시면 접속장애 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② **휴대전화 신청** :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며 안내문자에 따라 [1번]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[신청]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 이용 가능 기간은 5월 일 23시까지입니다.
- ③ **모바일웹 신청** :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한 후 『근로장려금』을 선택 합니다. **개별인증번호**()와 **주민등록번호**를 입력한 후 [신청하기]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고 [신청]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
- ④ **인터넷 신청** :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(www.eitc.go.kr)의 『근로장려금 신청』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- ⑤ 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방법

- »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(국번없이 125 번 전화 1번 누른뒤 4번 누름)
- » 세무서 소득세과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통화량이 많아 상담이 어려운 경우 문자상담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)
- » 문자 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: 문자메세지를 작성(와 「질문내용」을 40자 이내로 입력)한 후 번으로 전송 하시면 담당직원이 전화 또는 문자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.
- » 증거서류 팩스 제출 : 세무서 소득세과 팩스 번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상단에 를 기재)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

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
▶ **부양자녀 등 요건** :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1994. 1. 2. 이후 출생자이며, 60세 이상은 1952. 12. 31.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.

▶ **총소득기준금액 요건** :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부양자녀수	0명	1명	2명	3명 이상
총소득기준금액	1,300만원	1,7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
*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▶ **주택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,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 하여야 합니다.

▶ **재산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* 재산 : 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전세금, 승용차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· 적금 ·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(주식포함)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 · 입주권 등),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▶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- ① 2013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, 주거)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(다만, 2012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(생계, 주거, 교육)를 3개월 이상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.)
- ② 2012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)
- ③ 201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

증거 서류 제출

▶ **재산 증거 서류**

1.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①임대차계약서 사본(유상으로 임차한 경우) ②임대차확인서 (계약서 분실한 경우) ③무상임차사실 확인서(무상 임차한 경우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 · 입주권 등)가 있는 경우는 ①분양계약서 사본 ②분양대금 ·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③토지상환채권 사본 ④주택상환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『간주전세금』을 적용하여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)

▶ **소득 증거 서류** :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증거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
- | | |
|--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|
|--|---|



한국 세금
대한민국 세미래
稅來
한국 세금
대한민국 세미래

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

- 60세 이상인 자 -



님 안녕하십니까?

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뒷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**입니다. (지급은 심사 후 **9월 30일까지**)

■ **신청방법은**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① **ARS 신청** : [1544-9944](tel:1544-9944)로 전화한 후 [1번]을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**개별인증번호()**와 **주민등록번호**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* 3분 당 유선 39원, 무선 250원 정도의 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.

* ARS 권장시기는 5월 일()이며,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,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이용하시면 접속장애 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② **휴대전화 신청** :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 **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**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, 안내문자에 따라 [1번]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**[신청]**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 이용가능기간은 5월 일 23시까지입니다.

③ 그 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서 소득세과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방법

»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(국번없이 **126** 번 전화 **1**번 누른뒤 **4**번 누름)

» **증거서류 팩스 제출 요령 :** 세무서 소득세과 팩스 번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상단에 를 기재)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

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
▶ **부양자녀 등 요건** :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1994. 1. 2. 이후 출생자이며, 60세 이상은 1952. 12. 31.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.

▶ **총소득기준금액 요건** :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부양자녀수	0명	1명	2명	3명 이상
총소득기준금액	1,300만원	1,7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
*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▶ **주택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,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 하여야 합니다.

▶ **재산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* 재산 : 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전세금, 승용차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· 적금 ·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(주식포함)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 · 입주권 등),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▶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- ① 2013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, 주거)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(다만, 2012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(생계, 주거, 교육)를 3개월 이상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.)
- ② 2012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)
- ③ 201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

증거 서류 제출

▶ **재산 증거 서류**

1.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①임대차계약서 사본(유상으로 임차한 경우) ②임대차확인서 (계약서 분실한 경우) ③무상임차사실 확인서(무상 임차한 경우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 · 입주권 등)가 있는 경우는 ①분양계약서 사본 ②분양대금 ·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③토지상환채권 사본 ④주택상환사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『간주전세금』을 적용하여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)

▶ **소득 증거 서류** :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증거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
- | | |
|--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|
|--|---|